



두엄누리회보 제 25호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 02)522-4260~1 FAX : 02)522-4383

2005년 6월 24일

환경부·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6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와 가축분뇨를 별도로 분리하고 축산폐수로서 처리대상으로만 다루어 왔던 가축분뇨를 퇴, 액비로 이용 폐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축 분뇨의 개념정립

○ 축산폐수를 → 가축분뇨로 용어변경

2)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

○ 농림부와 환경부가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제도를 지자체별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가축분뇨관리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3) 가축분뇨의 발생량 관리

○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질소, 인 등의 토양 부하량을 고려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하

여 가축사육제한을 가능케 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자원화시설과 (정화) 처리시설로 명확히 구분함

○ 발생업체인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 적정 처리능가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 등 관리강화 하도록 함

○ 배출시설 및 자원화·처리시설을 임차하여 가축 사육과정 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5) 가축분뇨 이용제품(퇴, 액비)의 소비촉진 및 품질관리

○ 지자체별 이용계획 수립 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처리 유도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전문 유통업체, 지도기관 등 관련자 참여하는 유통 협의체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 유도.

○ 소비자인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 퇴, 액비 품질관리 기준을 농림부령으로정해 엄격히 관리함.

○ 액비 살포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살포기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 적정한 퇴. 액비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 부여

○ 소비 농가와 축산농가에게 퇴. 액비 살포 및 이용효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이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 전문가·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 중 공포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분야 제도개선 건의

그간 불편하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관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줄 것을 농림부가 요청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다음 4가지 사항에 관해 건의 하였다.

1. 비료관리법 중 비료의 분류체계 개정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에는 비료의 분류를 부산물비료와 보통비료로 대 분류하고 각 비종별로는 공정규격에 의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부산물 비료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음.

○. 문제점

- 보통비료 중 유기질 비료로 되어있는 비료의 종류를 보면 원재료가 모두 농산업 분야

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다른 비료가 무기성 물질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유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의 개념과 일치 하지 않아 유기물질로만 이루어진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의 분류에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정확한 물질 분류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비료의 정의에서처럼 비료는 식물과 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구성 물질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무기질과 유기질로 크게 분류 되는 것이 마땅함.

○. 따라서 보통비료에 포함된 유기질 비료는 부산물비료에 포함 시키고 부산물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명명하여 비료의 대 분류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분류 하는 것이 마땅함.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유기질 비료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기성물질로 이루어진 비료를 한 부류의 비료로 묶어 명명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정책을 실시하는 일선 행정부서에 일괄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비료관리법 개정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비료관리법 제 1 조의 2 (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하는 경우

2.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표기된 기준

제39조 (재활용의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2.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 문제점

- 이 예외조항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형편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실은 축산농가에게 해를 주는 조항으로 작용 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미 발효된 비료가 유통되어 소비자로부터 축분으로 만든 비료 전체에 좋지 않은 인식을 줌으로서 축산분뇨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

둘째, 각종 유기성 산업 폐기물이 소 규모 축산 농가를 거쳐 나오면 법 관리 외에 비료로 둔갑하여 값싼 금액이나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표기된 기준에 따라 재활용대상농가의 처리기준인 1일 발생량 400킬로그램 이하 만 법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특히 생산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일일 생산량 1.5톤은 매우 애매하여 큰 혼선을 초래하므로 생산량이 아닌 일일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 기대효과

○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자원화 하여 좋은 비료를 만들어 친환경농업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의 사기를 함양을 시키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축분퇴비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부의 농가들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산폐수의 관리 및 이용은 물론 무허가 불량비료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음.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수분 규제 개정건의

□. 현황및 문제점

○. 현황

-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 퇴비의 수분 규제는 50%이하로 규정

- 2001년 공정규격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하였으나 많은 민원 제기로 2년간 유예후 2004년부터 실시

○. 문제점

- 친환경농업의 필수품인 퇴비는 해마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구매자인 농업인의 제품 사용 패턴도 작물별 토양별로 다양화 하고 있는데 퇴비의 공정규격은 생산 공정을 무시한 규제로 획일화된 제품생산을 강요 하여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억제함은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구매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축산폐수의 액비화 처리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퇴비의 과도한 수분 규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정책 시행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 큰 모순을 들어내 보이고 있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정부 정책방향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맞춰 퇴비의 고급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어 1급 그린퇴비를 새로 만드는 등 등급화 하고 있으므로 질소 성분이 비교적 낮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원활히 하기위해 퇴비의 수분규제는 55%로 설정함이 마땅함.

□. 기대효과

- 질소성분이 많이 필요치 않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 등 작물별로 알맞은 다양한 제품의 생산
- 상대적으로 질소 성분이 낮은 스러리 돈사에서 배출되는 돈분이나, 우분의 퇴비화를 원활히 함.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대책

□. 현황및 문제점

○. 현황

-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를 위해 농림부는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을 중심으로 1991년부터 1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원화 방법과 처리 단계 등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예산의 중복투자와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계속해 환경 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가축분뇨의 문제는 그 자체가 비료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퇴비의 원자재로서 처리, 숙성, 포장, 유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비로소 소비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문제점

- 가축분뇨는 발생 주체인 축산농가에서 처리차원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올바른 용도의

자원으로서 소용되어지고 있지 않음

- 가축 분뇨는 철저하게 퇴비의 원자재로서 취급되어져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활용 정책은 축산농가 자체에서 원자재도 아니고 완제품도 아닌 상태로 배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및 처리와 활용에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음

- 가축분뇨가 주 원료인 퇴비비료는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년 간 매출규모가 수 천억원의 시장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그 판매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는데 축산 분뇨처리 정책은 축산 농가와 경종농가가 직접 연결되는 이상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축산농가가 분뇨처리를 위해 가축사육보다 더 힘들어지는 퇴비의 생산 유통을 책임지도록 권유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가축 분뇨는 그것을 원료로 하는 퇴비의 생산업체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나 발생 처인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처리하기에 골치 아픈 물질이므로 분야별로 업무 분담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올해 들어 확대 지원되는 분뇨처리 시설 지원자금은 축산농가가 아닌 처리 전문 업체에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함.

□. 기대효과

○ 분야별 전문성을 참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서 새롭게 생겨나는 퇴비분야의 발전은 물론 축산분야에도 마음 놓고 가축 사육에만 전념하게 하여 전체적인 농업 기술 발전은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 확실함.